

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# 심 사 보 고 서

의안번호	1982
------	------

2017. 8. 31.  
기획경제위원회

## I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7년 8월 14일, 서울특별시장

나. 회부일자 : 2017년 8월 16일

다. 상정결과 :

【서울특별시의회 제276회 임시회】

-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(2017.8.31)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 및 답변, 토론, 의결(원안가결)

## II. 제안설명의 요지(서동록 경제진흥본부장)

### 1. 제안이유

가. 기금의 존속기한('17.12.31)종료 예정에 따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필요

나. '17. 4. 1자 서울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변경

## 2. 주요내용

가. 중소기업육성기금 존속기한을 5년 연장

○ 조례 제3조의2(기금의 존속기한)

- 2017년 12월 31일 →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

나. '17.4.1일자 서울시 조직개편사항 반영

○ 조례 제9조(기금운용심의회 구성) 제2호

- 민생경제과장 → 공정경제과장

### Ⅲ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윤병국)

#### 가. 조례안의 개요

- 본 조례안은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운영 중인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이를 연장하려는 것임.

#### 나.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현황

-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,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조성과 융자지원을 통하여 기업의 경쟁력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1965년부터 설치·운영되고 있음.

##### <중소기업육성기금 사업 현황>

- 지원대상 : 자금이 필요한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
- 지원규모 : 1조원 규모 (급격한 경제상황 변화시 지원규모 변경)
  - ▶ 중소기업육성기금 : 1,900억원, 시중은행협력자금 : 8,100억원
- 지원내용 : 시설자금, 경영안정자금(운전자금)
  - ▶ 시설자금(기금) : 100억원 이내, 3년거치 5년 균분상환
  - ▶ 경영안정자금(기금, 은행협력자금) : 5억원 이내, 1년거치 2~4년 균등상환
    - ※ 은행협력자금: 이차보전 일반자금 1~1.5%, 특별자금 2~2.5%
- 추진방법 : 서울신용보증재단 위탁(보증·자금 연계지원)
- 추진절차 :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출연하여 운영

- 현재 서울시는 자금 유동성이 취약한 소기업·소상공인의 꾸준한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한 자금지원과 시중은행협력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원으로 지원 규모를 1조원 수준

으로 유지하고 있음.

<연도별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규모>

(단위 : 억원)

구 분	2013년	2014년	2015년	2016년	2017년
합 계	11,400	10,200	13,500	10,000	10,000
기금 직접용자	1,900	1,200	3,500	2,000	1,900
시중은행협력자금	9,500	9,000	10,000	8,000	8,100

- 특히, 2017년에는 기금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금 내 경영안전자금의 취급 은행을 1개(우리은행)에서 8개(우리·신한·KB국민·KEB하나·기업·농협·SC제일·산업은행)로 늘이고, 긴급자영업자금 지원의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여 소비심리 위축 등에 따른 경기침체와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·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하고 있음.

<2017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 실적>(17년 6월말 기준)

(단위 : 건, 억원, %)

구 분	계 획 (A)	용자추천			용자(대출)실행			
		건수	추천금액 (B)	추천율 (B/A)	건수	실행금액 (C)	실행률 (C/A)	
합 계	10,000	19,450	6,225	62.3%	18,462	5,703	57.0%	
중소기업육성기금	1,900	2,838	1,375	72.4%	2,759	1,295	68.1%	
시설자금	500	105	471	94.3%	104	438	87.5%	
경 영 안 정 자 금	소 계	1,400	2,733	903	64.5%	2,655	857	61.2%
	경영안정화자금	590	320	241	40.9%	362	240	40.6%
	기술형창업기업자금	100	54	67	66.9%	44	52	52.5%
	개성공단입주기업자금	10	1	5	50.0%	0	0	0.0%
	긴급자영업자금	600	2,358	590	98.3%	2,249	565	94.2%
	재해중소기업자금	100	0	0	0.0%	0	0	0.0%
시중은행협력자금 (경영안정자금)	8,100	16,612	4,850	59.9%	15,703	4,408	54.4%	
일 반 자	소 계	8,010	16,560	4,810	60.1%	15,650	4,367	54.5%
	경제활성화자금	6,910	12,637	3,932	56.9%	11,861	3,516	50.9%
	창업기업자금	1,000	3,884	842	84.2%	3,751	816	81.7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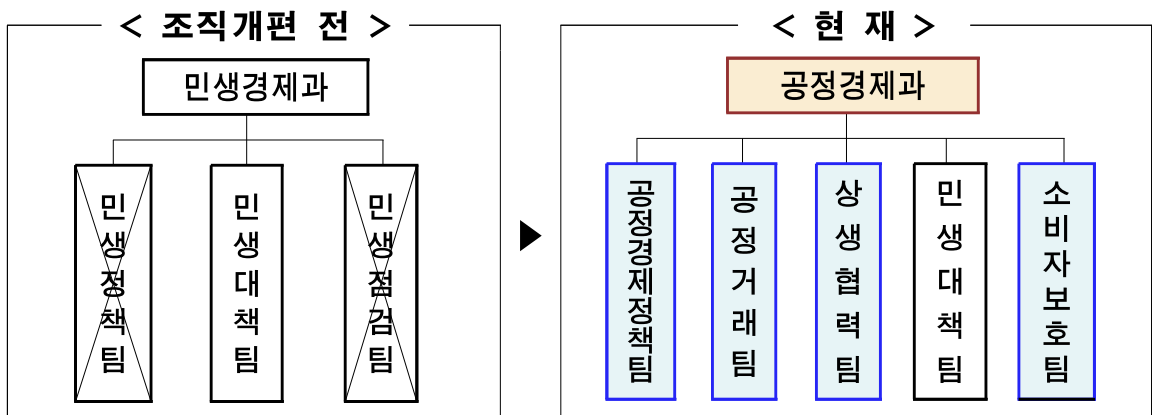
금 지 원  특 별 자 금 지 원	일자리창출 우수기업	100	39	36	35.7%	38	35	34.7%
	소 계	90	52	40	44.8%	53	41	45.2%
	사회적기업	2		1		3	2	
	여성고용 우수기업	40	48	39		48	38	
사회보험 가입촉진자금	50	2	1	1.2%	2	1	1.0%	

#### 다. 기금 존속기한의 연장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최장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고 기금을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두도록 한 입법의 취지는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불필요한 기금은 폐지하도록 하여 기금운용과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.
-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경우 서울에 소재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장기저리 융자 등의 지원을 수행하고 있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·소상공인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기금 존속기한의 연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.

## 라. 기금운영심의회 의 구성 현황

- 「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(이하 ‘조례’) 제8조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·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계획, 기금 조성 및 결산,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등을 심의하는 기금운용심의회를 규정하고 있음.
- 조례에 따르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소상공인지원과장과 민생경제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서울시의원, 민간경제단체 임직원, 금융인, 중소기업인 및 교수 등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원을 위촉하도록 하고 있음(위원 현황은 붙임자료 참고).
- 경제진흥본부는 2017년 4월에 조직 개편을 통하여 소상공인지원과의 상생경제팀과 경제민주화팀의 소속을 민생경제과로 이동하고 민생경제과의 명칭을 공정경제과로 변경한 바가 있으며 안 제9조는 조직 변경에 따라 민생경제과장을 공정경제과장을 변경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음.



#### 마. 종합의견

- 2015년에 발생한 메르스 사태로 매출이 급감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 가장 효과적인 지원방안이 자금 지원이었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음.
- 향후에도 경기침체와 내수위축으로 자금경색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조직 개편 내용을 반영한 본 개정안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없음」

V. 토론요지 : 「생략」

VI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(재적위원 11명, 참석위원 7명, 전원찬성)

VI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VI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#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982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7년 8월 14일  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## 1. 제안이유

가. 기금의 존속기한('17.12.31)종료 예정에 따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필요

※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: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 .

나. '17. 4. 1자 서울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변경

## 2. 주요내용

가. 중소기업육성기금 존속기한을 5년 연장

○ 조례 제3조의2(기금의 존속기한)

- 2017년 12월 31일 →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

나. '17.4.1일자 서울시 조직개편사항 반영

○ 조례 제9조(기금운용심의회 구성)제2호

- 민생경제과장 → 공정경제과장

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다. 협의사항

(1) 법무담당관(규제심사): 신설·강화 규제사항 없음

(2) 민관협력담당관(위원회): 해당 없음

(3) 예산담당관(비용추계): 해당 없음

(4) 감사담당관(부패영향평가): 원안동의

(5) 여성정책담당관(성별영향분석평가): 원안동의

(6) 갈등조정담당관(갈등영향분석평가): 원안동의

(7)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 
실·본국·국 협의 사항: 해당 없음

라. 기타

(1) 입법예고 (2017.6.22. ~ 7. 22.) 결과: 의견 없음

(2) 신·구조문 대비표: 별첨

(3) 규제심사 결과: 규제심사 대상 아님

(4) 비용추계 등 자료: 별첨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2 본문 중 “2017년 12월 31일”을 “2022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제9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### 2. 공정경제과장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# 4. 신·구조문 대비표

#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의2(기금의 존속기한)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 다만,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	제3조의2(기금의 존속기한) ----- ----- 2022년 12월 31일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제9조(기금운용심의회 구성) ① (생략) ② 위원장은 기금운용관이 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 1. (생략) 2. <u>민생경제과장</u> 3. (생략) ③ (생략)	제9조(기금운용심의회 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<u>공정경제과장</u> 3. (현행과 같음) ③ (현행과 같음)

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  
부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: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 :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 
제3조제1항1호

3. 미첨부 사유 :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에 해당  
- 기금 존속기한 종료 예정에 따른 기금 존속기한 연장 및 조직개편에  
따른 부서명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발생 요인 없음

4. 작성자 :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이정순(2133-5550)